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의 방향 (대외비)

2015. 8. 19.

국제인권법연구회

1.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소모임(분과위원회)

가. 연구회 설립 경과

- 2011. 6. 법관 33명이 법원행정처장께 연구회 설립허가 요청¹⁾
- 2011. 8. ○○고등법원 고법판사 이○○(임시간사),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 및 회원가입 안내' 공지
 - 발기인 대표, 김○○ ○○고법 부장판사
 - 공지된 '활동 계획'
 -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
 -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응답
 -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 성과의 정리 및 정보의 공유
 -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심포지엄, 외부강연 등 학술모임의 개최
 - 초기 회원들 : 김○○, 김○○, 김○○, 김○○, 김○○, 김○○, 나○○, 류○○, 박○○, 사○○, 서○○, 송○○ 안○○, 유○○, 윤○○, 이○○, 이○○, 이○○, 이○○, 정○○, 차○○, 최○○, 홍○○, 황○○ 등
- 2011. 10. 21. 창립총회
 - 선출 : 회장 김○○, 간사 겸 학술총무 이○○, 문화총무 이○○, 소모임총무 이○○
- 2012. 11. 30. 총회
 - 선출 : 회장 유임, 간사 유○○, 학술총무 김○○, 기획총무 김○○

1)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2조



■ 2013. 11. 22. 총회

- 선출 : 회장 김○○, 간사 김○○, 학술총무 안○○, 기획총무 신○○
- 주요 논의내용
 - 법관론, 사법부의 독립 등
 - 김○○ 부장판사의 제안으로, 소모임(분과위원회)²⁾ 구성을 top-down 아닌 bottom-up 형식으로 구성하기로 함 ⇒ 이에 따라 2013. 11. 김○○ 부장판사가 ‘난민법 소모임’을, 2014. 2. 김○○ 판사가 ‘법관론 소모임’을, 2014. 3. 허○○ 판사가 ‘표현의 자유 소모임’을 각 제안
 - 2014. 1. 커뮤니티 밴드 개설

■ 2014. 11. 21. 총회

- 선출 : 회장 이○○,³⁾ 간사 김○○
- 2014. 11. ‘인권편람’ 번역작업 완료 : 연구회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제4장 법관, 검사, 변호사의 독립과 공정성’
- 2014. 12.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 : 김○○, 나○○, 오○○, 이○○, 임○○, 홍○○
 - 총무(팀장) : 학술 강○○, 기획 송○○, 홍보 윤○○, 정책 이○○, 국제협력 현○○
 - 분과위원회(소모임) 위원장 : 법관론 미정, 표현의 자유 김○○, 난민법 안○○
 - 2014. 12. 이○○ 판사가 ‘소수자인권 소모임’을 제안

나. 소모임 관련

- 연구회 내 소모임은 ‘분과위원회’와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위에서 본 바와

2)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칙 제6조 (분과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 ① 연구회는 세부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간사 또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분과위원회 총무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 3) 2014. 6. 김○○ 고등부장이 김○○, 성○○, 이○○ 세 고등부장에게 “연구회 내에 본인 외에는 고등부장이 한 분도 없다, 가입해서 후배들을 도와 달라.”고 제안하여 새 부장판사가 가입하였음



같이 회원 5명 이상이 모여 bottom-up 형식으로 구성됨

- 소모임 대표(분과위원장)는 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체적으로 대표를 선정하면 자동으로 임명되는 것이 관례임

2.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약칭 “인사모”)⁴⁾

가. 설립 및 예비모임의 경과

■ 2015. 7. 7. 박○○ 판사의 제안

■ 2015. 7. 21.자 첫 예비모임

- 이○○ 부장판사 등 12인 참석 (뒷풀이에 未詳 2인 더 참석)
- 선출 : 분과위원장(대표) 김○○, 총무 박○○, 김○○
- 주요 논의 내용 : 법관사회 내부의 소통, 사무분담, 상고법원 등

■ 2015. 8. 11.자 두 번째 예비모임

- 이○○ 부장판사 등 16인 참석
- 총무 2인 중 김○○ 부장판사가 빠지고 박○○ 판사가 제1총무로 선출됨
- 주요 논의 내용 : 상고법원⁵⁾
 - 가칭 ‘상고법원 끝장 토론회’ 로 모임 명칭 부여
 - 이○○ 부장판사가 찬성론, 이○○ 부장판사가 반대론으로 각 기조발표 후 난상토론 ⇒ 결론을 내지는 않음

나. 향후 일정

- 정식 첫 모임 : 2015. 9. 14. 월요일, 주제는 ‘합의부의 운용’ (재판장과 배석의 관계)
- 차후 예상 논의 주제 :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4) 주요 내용은 별첨 1, 2의 2015. 7. 21.자 및 2015. 8. 17.자 각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법제도소 모임 관련 보고서 참조

5) 주요 내용은 별첨 4의 ‘인사모 1회 모임 정리’ 문건 참조



3. 문제점 검토

가. 연구회의 성격

■ 우리법연구회와의 관련성

- 발기인 대표 김○○ 부장판사 등 초기의 주요 회원들이 1988년 이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관련이 깊음⁶⁾
- 우리법연구회가 2009년 말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어 활동이 어렵게 되자 2011년 새로이 창설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참여적 · 진보적 색채

- 노동법연구회나 젠더법연구회, 변협 인권소위원회 등과의 공동세미나 활동에서 노동, 인권, 소수자 등 주로 사회적 성격이 강한 주제를 논의
- 표현의 자유(‘일베’와 명예훼손 등), 소수자 보호, 난민, 법관의 독립, 양심적 병역거부 등 소모임 활동에 비추어 볼 때 주로 진보적 입장에서의 이론을 전개

■ 주요 회원의 강한 유대관계

- 2015. 8. 현재 전체 회원 수는 405명에 이룸
 - 인권편람 번역본 수령과 관련하여 2015년에만 1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함
 - 다른 커뮤니티에 비하여 30기 이하의 젊은 법관 회원이 많음

6) 2010. 5. 공개된 우리법연구회 회원 60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음(괄호 안은 당시 소속)
▽ 부장판사급 = 오○○(수원지법 성남지원) 문○○ 이○○(부산지법) 김○○(수원지법) 최○○(인천지법) 박○○(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울산지법) 사○○ 유○○ 이○○(사법연수원) ▽
평판사 = 박○○ 권○○ 김○○ 이○○ 이○○ 홍○○(서울고법) 권○○ 조○○(부산고법) 김○○ 박○○(특허법원) 문○○ 박○○ 서○○ 윤○○ 이○○(서울중앙지법) 김○○ 최○○(서울행정법원) 마○○(서울가정법원) 이○○(서울동부지법) 곽○○(서울남부지법) 변○○(서울북부지법) 문○○(서울서부지법) 장○○(의정부지법) 박○○ 박○○(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유○○ 이○○ 임○○(수원지법) 구○○ 김○○ 서○○ 송○○(부산지법) 문○○ 위○○ 이○○(부산지법 동부지원) 김○○ 문○○ 최○○ 홍○○(창원지법) 김○○(창원지법 진주지원) 성○○(대전지법) 강○○(대전지법 홍성지원) 박○○(광주지법 목포지원) 이○○(전주지법) 박○○(전주지법 정읍지원) 김○○ 최○○ 한○○(대법원 재판연구관) 장○○(사법연수원) 정○○(헌법재판소 파견)



- 전체 회원 중 정기세미나 및 정기총회에 자주 참석하거나 커뮤니티 내 댓글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소위 ‘주요 회원’ 수는 약 30명 정도로 파악되고, 특히 이들 중 일부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야법조인들과 ‘Inner Circle’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주요 회원 이외의 회원들 대부분은 국제적 시각에서 본 인권 분야의 연구 혹은 제대로 된 인권법 공부를 위해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으나, 회원들 중 진보적 성격의 일부 젊은 법관들이나 인사문제 등 대법원에 불만을 가진 일부 법관들은 사안별, 주제별로 주요 회원의 의견이나 논리에 강한 동조를 보이고 있음
- 젊은 법관들 중 유학을 다녀오거나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OHCHR), EU 내 인권 관련 기관 등 국제기구 관련자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연구회 활동에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특히 같은 연구회 소속 이○○ 판사의 사망이나 박○○ 판사의 폐암 발병 등을 접한 후, 모금활동은 물론 이를 계기로 법관의 업무부담 개선, 이를 논거로 한 상고법원 설치 반대 등 대법원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 다른 연구회와 달리 임원진 및 부장판사들의 찬조금 출연, 그들 주도의 회식문화 등 고참 기수들에 대한 ‘선배’로서의 역할 요구가 당연시되는 등 특정 분야 연구를 위한 모임이라기보다는 私조직과 같은 인적 결합체로서의 분위기가 강함
- 요컨대, 주요 회원들과 일부 젊은 법관 회원들은 강한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단결된 유대관계를 보이고 있음

나. 인사모의 문제점

▣ 윤리규정 위반은 없음

7) 주요 내용은 별첨 3의 2015. 8. 17.자 이○○ 판사 관련 보고서 참조



- 인사모 활동이 법관의 단체활동 내지 연구활동에 관한 법관윤리강령 등 윤리규정에 위반되지는 아니함 (⇒ 윤리감사관실의 검토를 거침)
- 외국의 법관윤리규정(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 주석 138.)도, 법관이 법원 운영 등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에 관하여 외부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음

법관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외부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A judge may speak out on matters that affect the judiciary)

138. 법관이 정치적으로 논쟁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절하게 외부에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는 그 논쟁이 법원 운영, 사법부 독립(법관의 보수와 혜택을 포함하는), 법 집행의 근본적인 측면, 또는 법관 개인의 청렴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때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관한 경우에도 법관은 매우 신중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법관이 이들 문제에 관하여 정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더라도, '로비'하는 것으로 비추어져서는 안 되고 그 문제가 법원에 사건화 되었을 때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암시하는 것으로 비추어져서도 안 된다. 나아가 법관은 그의 논평이 사법부의 공식적인 견해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때때로 사법부의 견해가 아닌 순전한 법관 개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법관은 법과 관련된 토론에 참가할 수 있다(A judge may participate in a discussion of the law)

139. 법관은 교육적인 목적이거나 법의 약점을 지적하기 위한 법 관련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법관이 법안에 대하여 논평하는 것이 유익하고 적절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위헌 여부에 관해 비공식적인 해석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견해 제시는 피하여야 한다. 보통의 경우, 법안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견해표명은 실무적 영향이나 법안의 흠결사항과 관련되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는 쟁점은 피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법적 의견표명은 개인으로서가 아닌, 사법부 전체로서 또는 기관으로서의 노력의 결집 형태로 행하여져야 한다.

■ 연구회 내 소모임 활동의 적절성 有無

- 그러나 연구회는 대법원에 소속되어 그 인적·물적·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학술연구단체인바, 인사모의 활동 내용에 비추어 연구회 활동의 일환인 소모임 활동으로 적절한지 여부가 문제임



- 표현의 자유라든가 난민법 등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성격상 수궁할 수 있는 논제이나, 사법제도를 논의하겠다는 그 취지에 비추어 인사모는 연구회 활동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판단됨
-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는 연구회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8조(활동) ① 연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전문법률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
2. 사법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당 전문법률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 응답
3.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법원 내에서 공유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4. 해당 분야에 관한 법률심포지엄의 개최

- 연구회 회칙은 연구회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8조 (활동) 연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
2. 사법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 응답
3.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법원 내에서 공유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4.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법률 심포지엄, 세미나 등의 개최
5.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국제 교류
6.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 인사모는 상고법원, 재판장과 배석의 관계, 대법관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국제인권법 분야가 아닌 주제를 논의하고 있음 ⇒ 회칙 제8조 제6호의 ‘그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 대법원과 다른 의견의 외부 표출 우려

- 통상 소모임 개최 후 그 결과를 연구회 커뮤니티 내에 게시해 왔음
- 인사모는 상고법원 관련 논의 내용을 커뮤니티 내 게시판에 올릴 예정인바, 찬반양론의 각 논거를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고법원에 대한 찬반거수 결과까지 게시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 외부에서 볼 때 국제인권법 연구회 전체의 의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 비록 사전에 연구회 회장 및 대법원과의 상의를 거치겠다고 약속하기는 하였으나, 일부 회원(예컨대 이○○ 부장판사)이 사전 논의 없이 외부 언론에 상고법원 반대 의견을 제공하면서 연구회의 이름을 차용하는 독단적 행동을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다. 검토

▣ 외부로의 의견 표명 문제 ⇒ 현재까지는 통제 가능

- 현재 연구회는 물론 인사모를 포함한 소모임 활동은 90% 이상 파악되고 있음
- 주요 회원들도 문제될 소지가 있는 모임이나 활동은 자제하는 한편 회원들에게 대부분의 활동을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로의 의견 표출은 반드시 사전에 회장 및 대법원과의 논의를 거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다만, 2015. 8. 11.자 모임 후 2015. 8. 19. 현재 게시판에의 게시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묻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바,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논의 결과가 왜곡 전달되거나 다른 대다수 회원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 게시를 막기는 어려우므로, 내용의 순화를 권유하여 게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7조, 폐쇄커뮤니티의 개설에 의한 논의까지만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다만, 인사모의 경우에 갑자기 폐쇄커뮤니티를 개설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문제임

제7조(분과 및 폐쇄 커뮤니티)

- ① 연구회는 세부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고, 회장은 각 분과마다 분과별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 ② 연구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폐쇄 커뮤니티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회는 간사 또는 분과별 간사의 허가를 받은 회원에 한하여 폐쇄 커뮤니티에 자료를 게시하거나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8) 게시판에 올릴 내용은 별첨 5의 ‘새로운 소모임의 구성 알림 및 경과 보고’ 문건 참조



■ 향후 문제점

- 앞으로 연구회 및 소모임 활동은 우리법연구회와 비슷한 성격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60%가 넘는다고 판단됨
- 물론 現 회장의 임기 1년이 만료된 후 2016년 차기 회장으로 선출 가능한 고등부장들(김○○, 김○○ 등) 역시 연구회 및 소모임 활동에 대하여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2017년 이후 이○○ 부장 등 주요 회원들이 회장으로 선출되어 대법원과의 의견 교환 없이 독자적 활동을 하게 되고, 대다수 회원들이 별다른 의식 없이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법원 내 이질적 집단으로서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4. 대책

가. 연구회 자체 대책

■ 회장의 역할

- 연구회가 국제인권법 분야에 국한된 연구를 하는 경우 이는 격려하고 권장하여야 할 활동임
- 따라서 국제인권법 분야를 벗어난 인사모 소모임을 제외한 연구회의 다른 활동은 문제가 없음 ⇒ 아직 정식 모임을 가지 않은 인사모에 대하여는 향후 정식 활동 추이를 관망하면서 향후 몇 개월 간 통제를 하되 외부로의 의견 표출 등 움직임이 나타나면 강하게 제어를 하고, 연구회 전체에 대하여는 ‘연구회 활동’에 관한 회칙 규정을 근거로 국제인권법 분야가 아닌 논제에 관하여는 강하게 제어를 하여 연구회 내에서는 논의를 계속하지 못하게 제재
- 회장의 제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커뮤니티 내에서 그 문제를 공론화하여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을 것임
 - 대다수 회원들은 연구회의 원래 목적에 충실한 논제의 선택에 동의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주제에 관하여는 논의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임



- 만약 주요 회원들이 대다수 회원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계속 논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요 회원들은 대다수 회원들로부터 고립될 것임
- 다만, 대다수 회원들이 연구회의 본래 활동 목적을 벗어난 논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문제를 공론화한 회장의 권위가 손상되어 사퇴 수순을 밟게 되겠지만, 이는 연구회를 제도권 내에 둘 수 없다는 비판의 전제가 되어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 내 커뮤니티로서의 존립 근거를 상실할 것임

■ 고등부장들의 역할

- 김○○, 김○○, 성○○ 등 고등부장들은 회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소모임이나 지방 모임, 뒷풀이 모임 등에 대신 참석하여 회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고 있는바, 이들의 역할이 중요함
- 고등부장들로 하여금 건전한 소모임 창설 및 적극적 활동을 하도록 권유함으로써, 연구회 내 진보적 분위기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음

나. 대법원의 대책

■ 제1안

- 강경 案 : 대법원이, 인사모의 논제 선택 및 활동 내용의 문제점을 내세워 공식적으로 연구회의 성격 및 활동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에만 충실할 것을 연구회에 정식으로 요구하는 案
- 방식 : 연구회 회장과 간사에게 대법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회장이 이를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
- 장점 : 연구회의 향후 노선을 명확히 하여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단점 : 연구회의 일부 활동에 문제적 내용이 있다는 점과 무관하게, 주요 회원들과 젊은 법관들은 대법원이 커뮤니티 활동에 개입한다는 이유로 집단 반발할 우려가 큼. 이 점이 현재 추진 중인 상고법원 반대론과 함께 이슈화 된다면 법원 안팎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많음

■ 제2안



- 절충 案 : 대법원이 연구회에 대하여 인사모의 성격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커뮤니티 밖에서 논의하는 것은 몰라도 커뮤니티 내에서 논의하는 것은 不可하다는 대법원의 의견을 전달
 - 우리법연구회가 2015. 5. 정기세미나에서 상고법원 관련 토론을 하였으나, 제도권 바깥의 모임인지라 세간의 이목을 끌지 못한 선례가 있음
- 방식 : 대법원이 연구회 회장과 간사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하고 회장이 이를 연구회 내 운영위원회 및 인사모 대표와 총무들에 알려 연구회 밖에서 논의할 것을 설득
- 장점 : 문제 있는 소모임인 인사모 부분에만 제재를 가하여 대다수 회원들의 반발이 거의 없을 것임
- 단점 : 인사모를 중심으로 한 주요 회원들의 반발과 향후 활동의 음성화로 통제 및 관찰 범위를 벗어나게 됨

■ 제3안

- 유화 案 : 상고법원이라는 최대 현안이 해결될 때까지 연구회 및 인사모 소모임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외부로의 의견 표출이나 과격한 활동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이를 통제하고, 상고법원 현안이 마무리된 이후에 정식으로 문제를 해결
- 장점 : 연구회의 반발이나 이의 제기가 없을 것이므로, 상고법원이라는 법원 최대의 현안이 해결될 때까지 문제 돌출을 피할 수 있음
- 단점 : 추이를 관망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이후 사후적 통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화약고를 지키는 셈이 될 수 있음

■ 結 (기타 의견)

[끝]